

연구개발의 협약 체결부터 효율적인 관리방안

2008. 12. 18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장

곽 창 순

목 차

1. 연구개발 단계 우수기술 발굴 전략

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정
- 협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3. 기업과의 연구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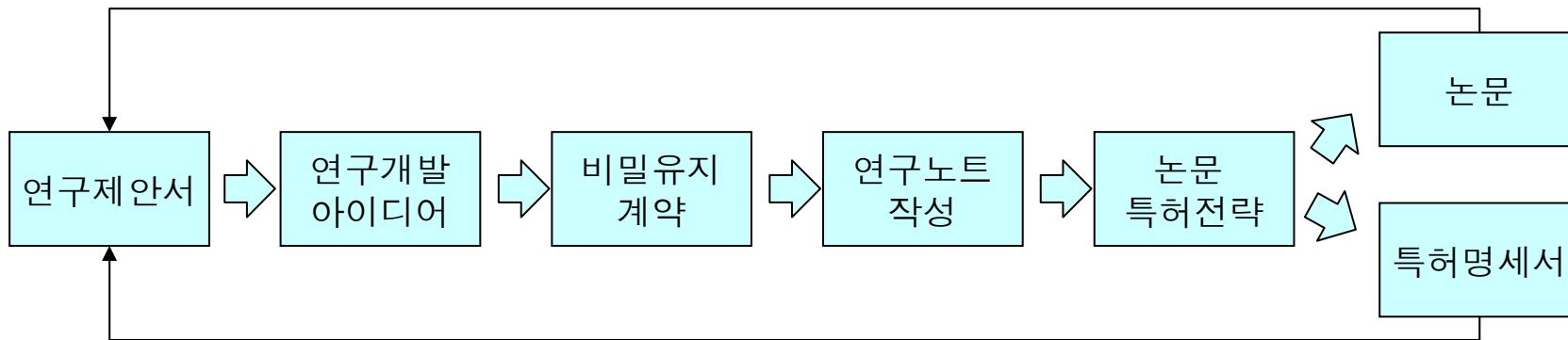
- 소유권 귀속 및 활용문제
- 보증, 면책조항
- 과도한 요구조항

4. 해외 연구개발 협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1.1 연구개발 단계 우수기술 발굴 전략

※ 연구실은 특허관리의 기초단위

<연구실단위 특허관리 주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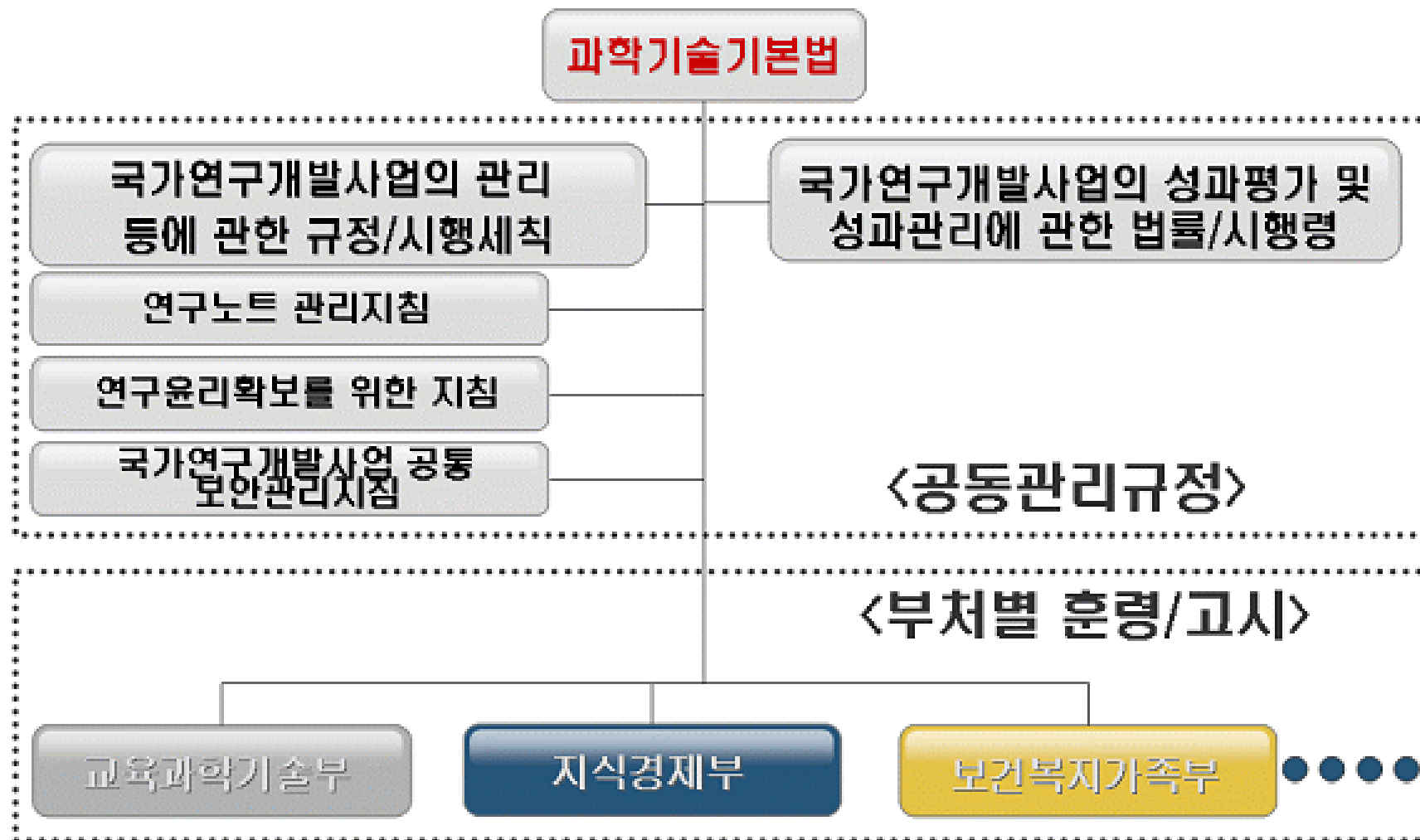
- ☐ 연구실 특허관리 매뉴얼 작성
- ☐ 연구실 특허담당자 지정
- ☐ 특허관리 매뉴얼 교육 (랩단위 컨설팅, 특허맵 등 병행)
- ☐ 연구실 특허관리 체크리스트 활용
- ☐ 직무발명 규정 제정 및 적용, 직무발명 설명회
- ☐ 연구노트 보급
- ☐ 우수 기술 적극 홍보 (교내 소식지 이용)

1.2 연구개발 단계 우수기술 발굴 전략

<연구실 특허관리 체크리스트>

주요사항	예	아니오	모름
연구실 특허관리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가?	☐	☐	☐
연구실 특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	☐	☐
연구실 구성원에게 특허관리 매뉴얼을 교육했는가?	☐	☐	☐
연구팀에게 비밀유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비밀유지 양식에 서명을 받았는가?	☐	☐	☐
적절한 양식의 연구노트를 배포하고 연구노트 작성 방법을 알려주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	☐
연구주제 선정시 선행 특허조사를 하고 있는가?	☐	☐	☐
기술이전 조직에 발명신고를 하고 있는가?	☐	☐	☐
발명신고시 기술이전조직 전문가와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가?	☐	☐	☐
연구성과를 논문과 특허로 동시에 출원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였는가?	☐	☐	☐
적합한 변리사를 선정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가?	☐	☐	☐
충실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강한 특허권을 확보하였는가?	☐	☐	☐
기술마케팅 또는 실험실창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거나 기술이전조직에 협력하는가?	☐	☐	☐

2.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구조



2.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구조

부처명	사업 규정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과학연구사업 처리규정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지식경제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정보통신연구개발 관리규정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처리규정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해양부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수산식품부	농림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2.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개정

□ 개정 주요 내용

1. 복잡한 연구비 비목구조를 '4비목 15세목'에서 '4비목 6세목'으로 단순화
 - 내·외부인건비 통합, 연구실(Lab) 단위 인건비 풀링제 도입 결정.
 - 직접비 : 7세목을 3세목으로 간소화
 - 간접비 : 5세목을 통합, 세목별 별도 계상기준 폐지, 지급된 간접비 내에서 주관기관의 자율적 집행 허용
 - 간접비 지급율을 '원가계산 방식' 기준으로 '12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 *
('08) 23% → ('09) 25% → ('10) 27% → ('11) 29% → ('12) 30%
2. 행정절차 간소화
 - 부처별 R&D 관리규정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부합하도록 유도할 계획
 - 국가 연구과제 응모시 산업체 대응자금을 의무화하는 각종 규제를 폐지
3.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 개선
 - 현행 지분에 따른 공동소유에서 주관기관 단독소유로 전환할 계획
 -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결과 전용실시권 및 소유권 양도시 우선권을 부여
 - 기술료 징수시 매출정률제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2.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

□ 제2조 (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전문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협동연구기관 : 협약에 따라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기관 : 협약에 따라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 위탁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실시 :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
- 기술료 :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참여기업 :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 기술실시계약 :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2.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

구분	내용	비고
중앙행정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관 정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부처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도 지칭됨)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
협동(연구)기관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으로 “세부연구기관”과 대등한 개념.	대학, 연구소, 기업 등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위탁기관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과제 내용 일부를 위탁으로 수행하는 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참여기업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및 기관으로 부처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도 지칭됨.	기업체, 산업체조합 등
연구개발사업단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앙정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협약체결, 실적관리, 평가결과보고 등 업무 수행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단, 세포응용연구사업단 등

2.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

□ 제3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함에 있어서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외 특허동향을 조사하여야 하며, 표준화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3.8, 2008.5.27>

□ 제12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연구개발결과 중 보안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2.8, 2008.5.27>

1.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결과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결과
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결과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결과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결과

2.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0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10조제3항 관련)			
구 분		사용 용도	계상 기준
비목	세목		
간접비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간접비는 인건비와 직접비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는 기관은 17%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할수 있다.)	

2.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0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구 분		간 접 비 계상여부	별도계정 관리여부	자체 운용요령 구비 여부	잔액 반납 여부		
(현)부처명	(구)부처명				과제 종료시 반납	과제 종료 후 3년 뒤 반납	과제 종료 후 5년 뒤 반납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	○	×	×	×	×
	과학기술부	○	○	○	×	○(기초연구)	○(특정기초주)
지식 경제부	산업자원부	○	×	×	○	×	×
	정보통신부	○	○	○	×	×	○주)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	○	×	×	×	×	×
환경부	환경부	○	○	×	○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부	○	×	×	×	×	×
농림수산물부	농림부	○	×	×	○	×	×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	○	×	×	×	×
	건설교통부	○	○	×	×	×	○주)
산하기관	기상청	○	○	○	×	×	○
	소방방재청	○	○	○	×	×	×
	문화재청	×	×	×	×	×	×
	농촌진흥청	○	×	×	×	×	×
	방위사업청	○주)	×	×	○주)	×	×
	산림청	○	×	×	○주)	×	×
	중소기업청	○	×	×	○	×	×
	식약청	×	×	×	×	×	×

* 주) 명시 규정/지침은 없으나, 실제 운용 현황을 반영

2.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5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이때 참여기업이 해당 지식재산권등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간 협약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동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과 제3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협약으로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물을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과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간에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관리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결과물을 관리하는 것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원칙 : 발명자주의

특허법 제33조 :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협약 형태	유의사항
전문기관 - 주관기관	표준협약서 사용
주관기관 - 협동기관	- 지식재산권 각자 소유, 각자 기술이전 - 지식재산권 공유 별도 협약 필요 여부 사전 검토
주관기관 - 참여기업	- 정부출연지분 단서 삭제 : 주관기관 100% 소유 - 참여기업 전용실시권 원칙 (협약에 따라 변경 가능)
위탁기관, 공동기관, 해외기관	- 위탁기관, 공동기관 : 협약에 따라 변경 가능 - 위탁기관 - 참여기업과의 경쟁 가능성 고려 - 해외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지침 기술 실시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 활동 (예정)기업 우선, 중앙행정기관장 승인 필요

2.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5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등이 모두 무형적 결과물의 취득 및 소유에 관한 권리를 서면으로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승계의사를 밝힌 당해 연구개발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⑦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이나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기타 주관연구기관이나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권 등을 전문기관 또는 특허청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2.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5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⑨제15조제1항내지제8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관리하는 기관(이하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양여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⑩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관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 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6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2.8>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07.2.8, 2008.2.29>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2.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6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련 규정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지침	•보안관리 규정 제정, 보안 담당자 지정, 보안심의위원회 운영 의무화 •연구과제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등급화 •보안과제의 경우 해외 위탁 제한. 해외 기술이전 시 관계기관의 승인 필요
산업기술이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핵심기술(지경부 고시)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에 기술이전하고자 할 경우 사전승인 의무화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기술개발촉진법	•전략기술을 해외 수출할 경우 승인 의무화(전략기술수출승인제도)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6조의2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관리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정보관련 시책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및 조정의 결과와 각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이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5.27>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개발정보 및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2.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6조의3 (연구성과 관리·유통의 기반 마련)

-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제7조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기관 중 한 곳에 등록 또는 기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등록 또는 기탁받는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련 정보의 관리·유통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연구 성과를 기탁받는 기관은 기탁 받은 연구성과물의 유지·보관·관리의 책임이 있다.

2.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 · 유통 전담기관(제16조의3제1항 관련)	
연구성과	관리 · 유통 전담기관
논 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특 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특허와 관련된 연구성과 및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고시하는 기관
보고서원문 (전자원문 포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기자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술요약정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거래소
생명자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 고시한 기관
화 합 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원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비고> 1. 이 표의 연구성과 중 “기술요약정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창출된 기술의 주요 내용, 특징 및 기술이전 조건 등 기술정보를 요약한 것을 말한다. 2. 이 표의 연구성과 중 생명자원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관리하되, 생명자원과 관련된 정보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2.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7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①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권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체결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하며, 해외 실시 또는 해외 이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업이 참여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관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5.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5.27>

2.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7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⑤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관리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2.8>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전산 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이전·확산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2007.6.29, 2008.5.27>

2.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8조 (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관리기관의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초연구의 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과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관리기관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관리기관의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술료 감면에 따른 세부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2.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9조 (기술료의 사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관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20퍼센트(영리법인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영리법인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분의 35퍼센트) 이상을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관리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의 납부 하지 않도록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관리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제1항에 따라 납부 및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재투자
2. 기관운영경비
3.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4.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삭제>

④ <삭제>

2.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9조 (기술료의 사용)

⑤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는 다음 각 호에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재투자
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연 등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 산입
5. 기타 기획재정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5월과 9월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관리기관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19조1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⑧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관리기관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에 대한 사용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2.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기술료의 사용)

(Question)

A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20,000,000원을 지원받고, 자체 재원으로 20,000,000원을 지원하여 백혈병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 결과물을 B업체에 이전하여 계약금으로 100,000,000원, 경상기술료 총매출액 5%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계약금이 입금되었다. 입금된 계약금 처리는?

(단, A대학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서는 발명자 보상 기준을 기술료 총수입 중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대학에서 제공한 제비용을 공제한 순기술료의 50%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구결과의 특허 출원 등록을 위하여 대학에서 10,000,000원을 지원하였다.)

2.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

□ 제20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제19조 (기술료의 사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 또는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5년 이내
6.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내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위반한 경우 : 1년 이내
8.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명의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1년 이내

3.1 기업과 연구계약 시 소유권 귀속

<사례>

1. "연구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생성, 산출 또는 취득된 모든 무형 또는 유형의 산출물 ("결과물" 및 "연구기술",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나 반드시 그에 한하지 아니한다. 이하 "결과물 등"이라 함)에 대한 권리는 "갑"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을"의 기보유 기술과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해 "갑"과 그 자회사는 전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상 및 영구적인 그리고 재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2. 본 연구기간 이후에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발생된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본 연구 기간 중에 본 연구 개발로 발생되었던 "연구성과"자체를 이용한 것이거나 "연구성과"로부터 파생 또는 개량되어 발생한 결과물인 경우는 "연구성과"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갑)의 소유로 한다.

3.1 기업과 연구계약 시 소유권 귀속

<문제점>

1. 연구자의 계속 연구 제한
2. 기 보유 기술 무상 제공
3. 연구자에 한정되지 않고 대학 전체 기보유 기술에 해당
4. 직무발명 규정 배치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 추가 연구 개발에 대한 유인 제공

이전 기술 유상 사용 - 연구 종료 전까지 해당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

개량기술은 개발한 측의 소유 - 개량 발명 정보 교환

대학 개량기술의 사용 - 우선권 부여/별도의 대가 필요

3.2 기업과 연구계약 시 보증 면책 조항

<사례>

1. 을은 연구과정 또는 결과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만약 갑이 연구결과를 적용 또는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함에 있어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요구 및 소송제기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갑에게 보상, 배상한다.
2. 제X조의 보증 등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갑"에게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을"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위 주장 및 소송을 방어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산학협력 연구개발 권리침해보증 현황(2006년)>

구 분	보증	일부 또는 협의	명시규정 없음	무응답	합계
건수(%)	300(22.8%)	33(2.5%)	946(71.9%)	37(2.8%)	1316(100%)

3.2 기업과 연구계약 시 보증 면책 조항

<문제점>

- 손해배상 위험

선행기술조사, 중간 검수, 최종 검수에서 제3자 권리 침해 여부 공동 확인 필요.

명시적인 비보증 조항 삽입 (조항 사례)

1. 대학은 본 연구비로 연구기간 내에 성공적인 연구결과가 달성된다거나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
2. 기업이 본 연구결과나 대학이 제공한 개량기술, 기보유특허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특정목적의 적합성, 품질, 이익 또는 제조비를 보증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손상 또는 인적 상해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3.3 기업과 연구계약 시 과도한 요구조항

<사례>

1. “을”은 이 계약에 따른 “연구용역”의 수행 기간 및 “연구용역”의 종료일로부터 3년동안은 “연구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에 대하여 연구, 개발 등의 용역을 제3자를 위하여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알게 된 기술정보, 제품정보, 경영정보, 업무상 비밀, 영업비밀 등 “갑”의 정보, “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결과물”, “연구기술”을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산출물 및 이 계약의 내용(이하 “비밀정보”라 함)을 이 계약의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엄격히 비밀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3.3 기업과 연구계약 시 과도한 요구조항

<문제점>

- 유사 연구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 대학 특성 상 기업 요구 수준의 비밀유지 어려움.
-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 행위

대학 연구실의 현실을 감안하여 비밀정보를 보다 구체화 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상호 보안 가능 (비밀정보임을 명시하여 제공하는 자료 등)

제3자 연구 제한은 연구자에게 치명적 조항으로, 동일 연구에 대해 합리적 기간을 한정할 필요가 있음. (합리적 기간에 대한 보상 주장 가능)

유사연구, 관련연구 등 모호한 표현 지양

대학의 특성 상 학문적 자유 보장 주장

4.1 해외 연구개발 협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국가별 특허 공유 제도>

공유제도의 내용	우리나라	일본	미국
공동출원	제44조 2인 이상 공동 출원	제38조 유사	35 USC 116 유사
지분 양도 및 질권 설정	제99조 공유자의 사전 허가	제73조 유사	관련 규정 없음
자기실시	제99조 공유자 동의 없이 가능	제73조 유사	35 USC 262 유사
실시권 허여	제99조 공유자의 사전 허가	제73조 유사	관련 규정 없음

1. 미국의 경우 발명자가 출원인이 되고 기관이 승계하는 방식이므로, 직무발명 규정이나 계약사항이 존재하는지 확인 필요하며, 선발명주의와 발명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노트 사용 의무화 필요.
2. 각국별 기술수출 관련 법령상의 규제 확인 필요